

의안번호	제474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자	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1월 17일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

(임병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4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17일

발 의 자 : 임병운, 박경숙, 김꽃임, 김국기,
이의영, 이양섭, 이종갑

1. 제안이유

- 충청북도가 소유한 못난이 농산물 관련 상표의 관리 및 상표권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판매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못난이상표의 종류 및 형상(문자, 도형) (안 제3조)
- 못난이상표를 활용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못난이상표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 관련 사항 (안 제6조)
- 못난이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및 경감 등 (안 제7조)
- 못난이상표권 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 등 사후관리 (안 제8조)
- 못난이상표 사용자에게 대한 홍보비, 판촉비 등 지원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상표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조례안예고 : 2023. 11.
- 협의 : 충청북도 농정국 농식품유통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소유한 못난이 농산물 관련 상표의 관리 및 상표권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판매를 향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상표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못난이 농산물 상표(이하 “못난이상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찌다 못난이
2. 착한 못난이
3. 건강한 못난이

② 못난이상표의 형상은 별표와 같으며, 못난이상표 사용물품류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못난이상표 관련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못난이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못난이상표의 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못난이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및 홍보
3. 못난이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못난이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못난이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못난이상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허가 이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의 회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 ① 못난이상표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못난이상표의 사용계획, 신청품목에 대한 검토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못난이상표 사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못난이상표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

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못난이상표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못난이상표 사용 상품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못난이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못난이상표의 위상 및 품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용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못난이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못난이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형태를 바꾸는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못난이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못난이상표의 이미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못난이상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표의 형상(제3조제2항 관련)

상표명	상표디자인
착한 못난이	
어쩌다 못난이	
건강한 못난이	

[별지 서식]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서

신청인	신청자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사무실) (핸드폰)				
	E-mail					
상표 사용 계획	품목	(톤)/ (톤)	사용희망 상표			
	못난이 예상 출하량 전체 출하량					
	상표사용 기간					
	상표활용 방식					
	주 유통경로 (판매처)					
	못난이 유형					
	그 밖의 사항					
<p>「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p>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시장(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						

관련법령 발췌

□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1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text{사용료등} = \text{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times \text{제품의 판매단가} \times \text{점유율} \times \text{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의 지정·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검토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품질인증 농특산물 품목선정에 관한사항

2.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의 지정·취소에 관한사항

3.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사항

4.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5. 기타 도지사가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농산물 등 주요상품의 홍보 및 판매향상과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못난이 농산물 상표 관리

2. 비용 발생 요인

- 못난이 상표권 출원 및 등록
- 못난이 상표의 활성화 및 지명도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

3. 관련조문

- 제4조(상표관련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못난이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 제9조(사용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못난이상표의 사용 활성화 및 지명도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상표등록 출원 비용은 '23~'24년에 대하여 실시
 - 홍보비, 판촉비 등은 지속 발생 예상, 추계는 '23~'27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추계단가

- 상표등록출원 비용

구 분	상표 출원료	상표 등록료	변리사 수입료
단 가	62천원	211천원	110천원

- 못난이 농산물 판촉은 연간 20,000천원, 못난이 김치 축제는 연간 100,000천원 ('24년은 70,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나. 추계 결과 : 578,381천원

- 상표출원료 : 출원료 62천원 × 17개 분류 = 1,054천원

- 상표등록료 : 등록료 211천원×17개 분류 = 3,587천원
- 변리사 수입 : (출원 110천원 + 등록 110천원)×17개 분류 = 3,740천원
- 못난이 농산물 판촉 : 20,000천원×5개년 = 100,000천원
- 못난이 김치 축제 : 70,000천원 + 100,000천원×4개년 = 47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78,381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농정국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